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원화환산납입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해당사항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3. 적용대상

외국통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계약에서 보험료를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함)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계약에 원화환산납입옵션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1회 보험료는 주계약에 따른다.

## 14. 원화환산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한다.

나.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함)이라 한다.

다. 환산기준일은 제1회 주계약 보험료의 경우 청약일의 직전 영업일로 하며,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의 경우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로 한다.

라. ‘다’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함)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마. 원화환산율은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한다.

## 15. 보험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계약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13. 적용대상'에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드리며, 또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원화로 지급한다.

- 1)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 2)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
- 3) 주계약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에서 정한 계약의 거절
- 4) 주계약 약관 '청약의 철회' 관련 조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 5) 주계약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관련 조항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

## 16. 기타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함